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특별기획세미나

강연자-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일시: 2011년 5월 4일(수) 오후 12시-2시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GLROOM

사회: 남기정(일본연구소 HK교수)

제목: 국제분쟁과 국제재판: 한국에의 함의

*기록: 지은숙

국제분쟁과 국제재판: 한국에의 함의

1. 모시는 말씀- 한영혜 일본연구소 소장

연구소로서는 독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원장님이 독도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2. 강연자 백진영 원장 약력과 활동, 저서 소개

3. 강연 요지

국제재판과 관련해서 지난 20년 간 큰 변화가 있었고 그 시사점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국가 간 분쟁의 해결의 기본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삼자의 도움을 빌리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을 적용하는 재판소에 분쟁을 맡기는 것이 사법적인 해결방식인 것이다.

국가간의 재판의 역사는 짧다.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 체제의 산물. 미국 독립 전쟁 종결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재판을 통해 양국간의 분쟁 해결한 것이 기원. 19세 말. 그러나 사법적인 해결은 제한적이었다. 재판소는 특별 재판소와 상설 재판소가 있는데, 상설 재판소의 역사는 더 짧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치됨.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다. 냉전종식 이후 20년 간 큰 변화 맞이함.

1) 재판소의 증가

지난 20년 간 10개 이상의 새로운 재판소가 생김. 국제해양법재판소도 96년에 설치.

2) 재판건수의 급증

지난 20년 간 국제사법재판소는 1946년 이후의 100여개의 사건이 회부되었는데 그 중 절반이상이 지난 20년간 제기된 것.

위와 같은 현상의 원인, 함의, 대응에 관해 살펴보자.

(1) 국제 재판 활성화의 원인

국제재판소의 신설 및 개편, 강제 관할권에 대한 태도 변화, 재판 회부 사건의 급증(특히 유럽에서 비약 폭발)

*네델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재판소가 7개가 있다. 헤이그는 capital of international justice.

거시적 원인: 냉전종식, 무한경쟁의 시대의 국익의 공세적 추구. 세계화. 민주화와 인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

미시적 원인: 재판소 차원의 활성화 노력(재판절차 간소화, 재판비용 보조, 정보화 홍보 능력 배양)

(2) 활성화의 함의

긍정적 측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법의 지배를 통한 공정한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 국제법 발전에 기여, 전문 재판소를 통한 전문적 판결 기대,(해양권, 인권, 전범....)국제기구나 사인등 비국가 행위자에게 재판접근 허용, 재판소의 복수화를 통한 경쟁 유발,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해양분쟁 때 사법재판소로 갈 거냐, 해양재판소로 갈 거냐).

부정적측면: 국제법의 분열과 혼란 초래 가능성(재판소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정리해 줄 곳이 없다는 가능성과 우려), 국제관계의 과도한 사법화, 국제분쟁 조장 가능성.

(3) 대응 방향

국제 재판에 대한 한국의 태도: 매우 소극적. 한국은 한번도 국제재판에 간 적 없고, wto관련해서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예는 있다. 재판공포증이 있음. 유교문화구너인 동아시아는 법과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영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제소들 많이 한다. 아시안 국가들이 국제재판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등은 여러 번 드나들었다. 일본은 특히 국제 재판을 여러 차례 했다. 일본은 국제법 연구 중시하는 나라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 번도 재판한 적이 없는 나라. 중국은 주권 중시하는 입장이라 자국의 분쟁을 재판소에 의뢰하려 하지 않는다.

국제 재판의 장점: 분쟁타결, 교착된 분쟁을 마무리 짓는데 유용, 힘의 역학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정당성 및 수용 가능성 높음, 탈정치화,

국제 재판의 단점: 패소 가능성, 불확실성, 분쟁 당사국간 관계 경색의 가능성.

*국제재판에 대해 보다 전향적 정책 필요하다. 재판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추세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다 국제재판에 가는 것은 아니다. 재판만능주의와 재판 공포증을 모두 경계한다.

-사활적 이익 걸린 사안은 배제.

-전문적 기술적 이슈가 얹힌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 분쟁에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동향 파악, 전문인력 양성, 경험 축적.

4. 질의 응답

(1) 국제재판의 3C ? -> court, counsel, case.

(2)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재판으로 가져가게 되면 판결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주권과 관련해서 궁금함. 덧붙여 '실효적 지배'가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영유권 분쟁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All or nothing의 심각한 판결이 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최근 분쟁에서, 페드라브랑카 섬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사이 좋게' 섬을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유권 분쟁은 승자독식의 판결이다.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만, 국제법에서는 영토를 획득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당 영토를 컨트롤 했느냐의 여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을 정착시켜서 살게 하고, 행정관리를 보내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 군대를 주둔하게 한다든가. 하지만 독도처럼 역사적으로 방치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effectively control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Relative concept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가가 결국은 관건이다.

- (3)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 방출할 때 인접국가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미국과만 사전에 의논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소사건으로 성립되는지, 환경단체 등의 차원에서도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임해원전의 경우, 냉각수 등을 여과시설을 거쳐서 배출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히 방출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격과 규모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먼저 요구된다. 국내 언론에서 오해가 있는 것이 육지에서 discharge하는 거 말로 폐기물을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던지는 dumping이라는 것도 있다. Dumping은 아무리 저준위라고 해도 전면 금지이다. 그러나 discharge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 (4) 국제 재판소의 직원의 구성과 한국인의 진출 현황, 국제 재판소에서 일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국제해양재판소의 경우 행정직원이 50여명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 직원 업무에서 제일 중용나 것은 legal office와 행정업무. 재판소들은 다 공식 언어가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번역하는 직원들도 많다. 국제재판소 업무의 60-70%는 통역과 번역업무이다. Official bilingual로서 영어 불어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사용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훨씬 더 대규모이다. 수백 명 규모이고 예산도 엄청나다.